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52호 2021. 11. 11.(목)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320호 낚시통제구역 지정 고시 ----- 1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1431호 사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공시송달 공고 ----- 2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1434호 사천시 온종일 들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4

회 람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752호

사천시 고시 제 2021-320호

낙시통제구역 지정 고시

「낙시관리 및 육성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낙시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합니다.

2021. 11. 11.

사 천 시 장

1. 낙시통제구역의 명칭 및 위치

명칭	용도	위치	지정구역
사천시 노을전망교	교량	사천시 대방동 759번지선 공유수면	노을전망교 교량 내

2. 낙시통제구역 지정일: 2021. 11. 09. 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3. 낙시통제 위반 행위자에 대한 벌칙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제1항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 천 시 공 보

제752호

사천시 제2021 - 1431호

사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공 시 송 달 공 고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손실보상협의 문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11.

사 천 시 장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사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 나. 위 치 : 사천시 정동면 수청, 고읍, 예수리, 사천읍 사주, 용당리 일원
- 다. 사업 규모 : 하천정비 3.8km
- 라.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지사

2. 공고내용

- 가. 공고 기간 : 2021.11.11 ~ 2021.11.25.(14일간)
- 나. 공고 장소 : 사천시 지정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각 시·군·구 게시판, 사업지 관할 면사무소 게시판

3. 보상계획

- 가. 협의기간 : 공시송달 공고기한 내
- 나. 협의장소 : 경남개발공사 수탁보상팀(☎055-269-8378)
- 다. 보상방법 : 현금보상
 - 위 협의기간 중 미 체결 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에 따른 손실보상
- 라.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사 천 시 공 보

제752호

마.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토지의 경우	가. 인감증명서 2통	나. 주민등록초본 2통(주소 이력 포함).
	다. 통장 및 신분증 사본	라.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인감도장 지참	

4. 공고 대상

- 사업명 : 사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 소재지 : 경남 사천시 사천읍, 정동면

일련 번호	소재지 및 지번	토지			물건명세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목		면적 (㎡)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공부	현황									
1	사주리 110	답	답	23				정도연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50-3 효성아파트 에이-204	사천축 협		근저당권
2	예수리 446-6	임	임	97				사천군 정동면 예수리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446-2			

5. 기 타

가. 보상협의 요청서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의 시행('20.8.5. ~ ' 22.8.6.)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으니 대상이 되는 자는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사천시 민원교통과 ☎ 055-831-2810)

다.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상수탁기관인 경남개발공사 수탁보상팀(☎055-269-8378)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752호

사천시 공고 제2021 - 1434호

「사천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초등돌봄 공공인프라 확대 및 지자체 중심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등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 수립, 사업 지원 및 돌봄서비스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다. 지역돌봄협의체 기능,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안 제15조까지)

사 천 시 공 보

제752호

라.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부터 안 제18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 여성가족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674,

FAX: 831-6018)

사 천 시 공 보

제752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사천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 제정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752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돌봄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문화활동 및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보호자가 안전하게 돌봄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제공되는 교육·보호·활동프로그램 등의 돌봄서비스를 말한다.
4. “온종일 돌봄 시설”이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에게 온종일 돌봄을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지역공동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

사 천 시 공 보

제752호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온종일 돌봄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2장 온종일 돌봄 정책 및 사업

제4조(온종일 돌봄 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온종일 돌봄에 관한 정책 방향 및 추진 목표
2. 온종일 돌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온종일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온종일 돌봄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온종일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온종일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사 천 시 공 보

제752호

4. 온종일 돌봄 민·관 협력 및 지역연계 사업
5. 온종일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온종일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온종일 돌봄서비스)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온종일 돌봄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 활동 서비스
2. 아동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서비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온종일 돌봄 관련 서비스

제3장 지역돌봄협의체

제7조(지역돌봄협의체) 시장은 온종일 돌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온종일 돌봄 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천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온종일 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2. 온종일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온종일 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 천 시 공 보

제752호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및 시 교육지원청의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온종일 돌봄 시설 관계자
2. 온종일 돌봄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온종일 돌봄 시설 이용 학부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752호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조제1호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실무협의회) 협의체는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752호

제15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온종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4장 다함께돌봄센터

제16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온종일 돌봄 수요와 제공 여건을 고려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함께돌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비스 제공
2.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
3. 아동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③ 시장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비용) ①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서비스 종류나 이용 아동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사 천 시 공 보

제752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8.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 ③ 제2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보험) ① 시장은 온종일 돌봄 시설 및 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52호

관 련 법 규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

사 천 시 공 보

제752호

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 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 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